

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

□ 관련근거

-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(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) 제10항
- “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” 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(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)

□ 주요내용

○ 보험급여 제한

- ✓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선납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,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월 1일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합니다
 - ☞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료 체납자 최초 급여제한 시작일 : 2019. 8. 1.
- ✓ 외국인 등은 보험료 체납과 동시에 병·의원 진료단계에서 급여제한
- ✓ 진료종료 이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음

○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보험료체납자 급여제한 확인 방법

- ✓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면 보험료 체납자는 ‘외국인보험료체납(급여제한)’ 으로 표출 됩니다
 - 급여제한으로 표출된 외국인 등은 진료비 전액(공단부담금 포함)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... 체납보험료 납부시점부터 보험급여 가능
 - ☞ 체납보험료 납부시 고지서(OCR)보다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실시간 확인 가능

○ 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의 신분증 확인 필요

<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 주요내용... 시행 '19.7.16. >

◆ 주요내용

-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
- ※ 결혼이민은 입국한 날, 다만 입국하고 외국인 등록한 경우 등록일

◆ 보험료 등을 미납하면 불이익 발생

- (보험급여 제한) 병·의원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제한
- (비자연장 등 제한)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(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관서)